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2월 8일

나. 발 의 자: 임헌호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2.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임헌호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청년 행정체험단 사업으로 개정하고, 사업 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여 행정기관 직무 경험을 통해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행정체험단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비(非) 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참고하여 영등포구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자격을 대학생에서 비(非) 대학생까지 아우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대상)에서 “청년행정체험단” 대상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의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 규정함.

○ 검토 결과

-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2008년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 일자리 확대 사업의 하나로 대학생들에게 취업 전 행정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등록금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음.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정. 2019.04.11)를 제정하여 시행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동 조례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4호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한정하여 사업을 운영해 왔음.
- 대부분의 지자체 청년행정인턴 모집에서,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비(非) 대학생이 배제됨에 따라 대학생 이상의 학력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및 서울시 시민인권 침해구제위원회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학력에 의한 차별이 국민 기본권인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함.
- 이를 참고하여 우리 구(區)에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대상자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하겠음.
- 한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는 “청년”을 선발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은 청년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원 대상에 대한 기회의 평등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4
----------	-----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임헌호, 유승용, 우경란

신흥식 의원(4인)

1. 제안이유

현행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청년 행정체험단 사업으로 개정하고, 사업 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여 행정기관 직무 경험을 통해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행정체험단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의료급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4. 2. 13.~ 2. 18.):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영등포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의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2. 「고등교육법」 제2조의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제3조(운영시기)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행정체험단을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근무방법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주민

센터, 영등포구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행정체험단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 및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의 업무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체험단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신청)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

2.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

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수요 및 신청자의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등록 장애인 본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임금기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보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

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